

Oct 2024. Issue 190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

생각과 현실

06 ... 면세점은 여행자만의 시장인가? 수출지원역할은 안되는가?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2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논리로 푸는 HS 사례

16 ... IDOL GOODS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Global Customs Insight

19 ... EUDR 시행 12개월 연기와 우리의 자세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1 ... EU 탄소국경제도 (CBAM : EU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5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비는 누구에게나 내린다*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우리 모두의 마음 밭에도 사랑의 씨앗이
날아와 뿌려 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



- 1994년 10월 21일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 이듬해인 1995년 6월 29일에는요?
- 2003년 2월 18일에는요?
- 2014년 4월 16일에는?
- 2022년 10월 29일에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성수대교 상판 일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9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추락된 차량 중에는 시내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에는 강북의 초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던 스무살 이승영씨도 있었습니다.

승영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승영씨의 일기장에서 '내가 평생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어 놓은 14가지의 소원을 발견**했습니다.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한 명 이상 입양한다.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승영씨의 어머니와 동생 상업씨는 그 소원들을 이뤄**왔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가도 개인도 사전에 끊임없는 대책을 세우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천재와 인재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면세점은 여행자만의 시장인가? 수출지원역할은 안되는가?'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IDOL GOODS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EUDR 시행 12개월 연기와 우리의 자세'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EU 탄소국경제도 (CBAM : EU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입니다.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도 57세에 불의의 사고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5살 젊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참척(慘慼)의 슬픔을 이길 수 없어 짐승처럼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하여, 아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주분듯 질문했습니다. 통곡을 고스란히 참기가 너무 힘들어 미친 듯이 글을 썼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88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는 집요하고 원한에 찬 질문은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되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누움, 사고의 전환, 뒤집어 생각하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할 지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아들의 2주기를 넘겨서도 박완서 작가의 회의와 비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위 가족 및 친지들의 염려와 도움으로 서서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잠잠한 듯 하지만 함께 하시고 도움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아 속에 숨겨 놓았던 작은 신앙심의 씨앗을 이웃에게 보낼 엄두도 생겼습니다.

고3이었던 상업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책임자들을 다 사형해야 한다며 친구들과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그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년 넘게 방황하며 큰 교통사

고까지 당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기억이 돌아오며 누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한다.'

누나 덕분에 승영씨 어머니와 동생의 삶에 큰 전환이 왔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이니 사랑을 나누는 걸 미루지 말자, 필요한 곳에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승영씨 가족은 사고 보상금을 모두 교회에 기부해 '승영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쯤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고, 군부대에 이동 도서관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네 소원을 어미가 모두 이뤄주겠다'는 계획을 하신 어머니는 직접 해외봉사, 선교를 떠나셨고, 상업씨는 2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습니다.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고, 행운도 불행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와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불의의 사고는 발생합니다. 국가나 누구를 원망한 적 없어요. 누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현듯 고난이 닥쳐오고 갑작스런 고통이 발생합니다. 아닌 듯 싶어도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듯 모든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이 고난에, 이 고통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은 어떻게 견디어 가야 할까요? 극복할 수 없는 고통, 평생 지고 가야 할 멍에가 화풀이나 복수 따위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저를 도울 겁니다.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승영씨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승영씨 어머니와 상업씨의 마음 밭에 뿐 아니라 승영 장학금을 받은 학생 등 많은 사람들에게도 날아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 들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고 또 더 많은 씨앗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밭에도 사랑의 씨앗이 날아와 뿌려 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화, "성수대교에서 누나 잃었지만...", 조선일보, 2024.10.21

<<https://mail.google.com/mail/u/0/#inbox/FMfcgzQXJKsJVMkncwBgmtkdcXkGrLjt>>

**박원서, 한 말씀만 하소서 (서울: 세계사, 2004)





생각과 현실

면세점은 여행자만의 시장인가? 수출지원역할은 안되는가?

-면세점 창고 반입 후 2개월미만은 해외대량구매를 금지하는 규제완화 정책건의-

1. 무역수지적자와 중국발 해외직구 덤핑으로 국내 경기는 침체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수출은 감소가 우려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 180억달러 적자로 32년만에 전환되었고, 2024년은 중국의 경기침체로 "저가밀어내기"와 "알리, 테무 등 덤핑 해외직구"로 인해 우리의 제조, 내수, 유통시장은 침체되어 가고 있다. 이자율이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인위적인 재정정책이고, 국내 경기침체 특히 자영업의 위기는 온라인 유통의 증가, 재택근무확대, 해외직구 면세품목의 급증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한국의 제조업은 더 이상 한국에서 내수확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게 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



서 영 진

부대표/관세사
wed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여전히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수출시장이다.

미중보복관세, 중국업의 발달 등으로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가이면서 K-브랜드를 앞세운 소비재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더욱 확대해야 하는 수출시장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내수침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수출해서 성장률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위기를 겪게 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3. 면세점시장에서 판매하는 한국산제품은 DUTY FREE 가 아니다.

우리나라 면세점(Duty Free Shop)에서는 관세와 주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는 외국산 물품과 부가세만 면제되는 국내산 제조물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외국산 주류, 명품, 시계, 화장품 등 해외여행자가 구매할 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재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곳은 맞다. 하지만 면세점을 보는 관점은 많이 바뀌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한국산은 주로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데, 국산화장품이 본격적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시점은 2000년대 초반으로 K-뷰티 화장품열풍이 2016년 중국에서 확산되면서 B2B 거래가 한 때 연간 7조원을 넘었던 적도 있는데, 현재는 연간 1조원에 불과하다. 중국발 알리, 테무 해외직구가 연간 5조원을 육박하고 연간 50%이상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완전히 소비재시장이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산화장품 제조사들은 중국에서 화장품 인기는 과거의 영광이라고 해도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산 화장품의 중국시장 매출이 감소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중국정부에서 외국산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본 및 한국의 화장품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체 품질기술력을 높이고, 중국소비자의 애국소비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최근 모든 산업의 인재가 G2로 몰리는 현상은 비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인 화장품에서도 빠르게 나타나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면세점위기는 계속 된다.

국산화장품의 중국수출감소는 국내 면세점시장의 위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롯데면세점은 24년 상반기매출이 전년대비 43% 감소한 1조 6700억 원에 462억 영업손실로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신라면세점도 세계 3위에서 5위로 밀려나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으로 손실은 면했으나, 전년대비 83%가 하락한 상황에 있다. 면세점의 매출감소는 다른 영향도 있지만 국산화장품의 매출감소는 면세점 매출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관광객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중국인 보따리상의 B2B 거래에 따른 대량구매로 면세점은 위기를 모면했으나, 해외여행이 정상화된 2024년의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앞날은 암울한 상태이다. 해외여행의 트렌드 변화와 중국 경기침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면세점 규제와 정부의 면세점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업이 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면세점은 외국산 관세면제물품만 파는 곳도 아니고, 해외여행자만을 위한 곳도 아니다.

정부에서는 면세점시장이 본래 여행객을 위한 B2C 시장인데, 코로나 기간에만 B2B를 특별히 허락해 해외대량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면세점시장의 본래 역할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면세점시장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B2B 거래를 통해 세계 1위의 면세점시장으로 성장했고, 그 혜택을 면세점과 국내 입주업체들이 누리 왔고, 정부는 면세점의 이익에 대한 세금징수와 특허수수료인상, 면세점 입점수수료 형태로 이익을 취해 왔다.

면세점시장이 관세가 면제되는 외국산 물품만을 위한 시장도 아니고, 여행자만을 위한 시장도 아니라는 것이 이미 공통된 인식이다.

만약 재래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재래시장상인 외에도 상품공급자, 농민, 소비자, 운송기사, 시설관리자 심지어 세금징수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듯이 면세점산업의 이해관계자는 해외여행자와 면세점 사업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면세점시장도 재래시장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곳이고, 이 시장의 관리도 해외여행자와 면세점 사업자만 보고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서는 안 된다.

6. 한국산 화장품을 대량구매하는 외국인에게 신제품은 안되고 안 팔리는 장기재고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세점 시장의 위기상황에서 24년 2월 관세청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의 해외대량구매자에게 면세점창고 입고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물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함으로써 한국산 화장품의 매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면세점을 통해 수출을 하자고 하는데 무슨 판매규제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지만, 코로나기간에 대량구매자에게 판매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배려이고, 이제는 면세점시장은 해외여행자만을 위한 공간이니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대량구매자의 선택권을 국내화장품 제조기업과의 상의도 없이 관세청에서 면세점 판매를 제한하니 국내 제조기업의 피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당장에 해당기업의 고용감소 피해 뿐만 아니라 원료와 용기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어서 정책을 펴는 것은 공급망관리 이론에 맞지 않는 일방적 정책이다.

면세점 해외 대량구매자에게 국산 화장품을 2 개월간 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로 인해 면세점 창고내의 화장품 재고가 올해 2023 년보다 9 배가 증가하고, 신제품으로 팔아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중국 시장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굳이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에서 2 개월이상 썩혀서 화장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판매하게 만드는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해외구매자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사고 싶은 욕구를 제한함으로써 한국산 화장품의 면세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배려인지 납득할 수 없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한국산 화장품 매출이 줄어 들면 우리나라에 무슨 혜택이 있는가? 수출이 감소되는 것을 바라는 것인가?

7. 면세점시장에서 구매한 한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는 중국구매자의 특수성

한국산 화장품을 중국에서 한국간판을 걸고 판매하는 것보다 중국인이 판매하는 것이 더 잘 팔리는 중국소비자의 특수한 문화 속에서 중국시장에 직접진출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도 어려워 매장이 철수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큰 도시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이거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만 한국산 화장품을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면세점을 통해서 해외대량구매자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면세점의 대량구매를 지원을 하는 것 밖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8. 축소되는 중국시장이라도 해도 아직까진 최대 수출국인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중국으로의 화장품 매출기업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급격한 주가하락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지위는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애국소비, 중국산의 품질개선, 경기침체 등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차별과 시장의 변화는 빨리 나빠지고 있다.

한국산을 면세점 2 개월 내에는 대량구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제를 풀어 준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의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것이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보세산업지원 정책협약이 현재 면세점운영 사업자와 면세점협회와의 대화에 주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건의를 해도 듣기만 하고 치밀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다. 또한 국내 제조기업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면세점 운영사업자가 늘 시장지위에서 우위에 있어 건의를 직접 하기도 어렵다. 화장품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화장품 제조사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원료와 용기를 받아 가공하고 브랜드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대기업만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중국시장에서 일본이나 프랑스의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는데 면세점시장에서 대기업에 2 개월 대량판매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상태로는 중국시장에서 한국화장품의 위치는 금방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글로벌 고급 브랜드 제품의 각축장인 면세점판매에서 대기업 규제를 두는 것은 다른 국가의 브랜드가 중국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우리 정부가 도움을 주는 정책일 뿐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각을 달리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9. 급변하는 국제상황에서 기업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해야 한다

2 개월이내 반입된 국산 화장품 해외대량구매자 판매금지는 국산 제조기업의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마진을 제조기업과 면세점, 대량구매자가 나누어 갖는 구조에서 현재의 규제는 면세점 매출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산 화장품 제조기업의 수출감소, 매출감소, 고용축소, 경쟁력약화, 면세점직원의 고용불안, 면세점시장의 위축에 이르기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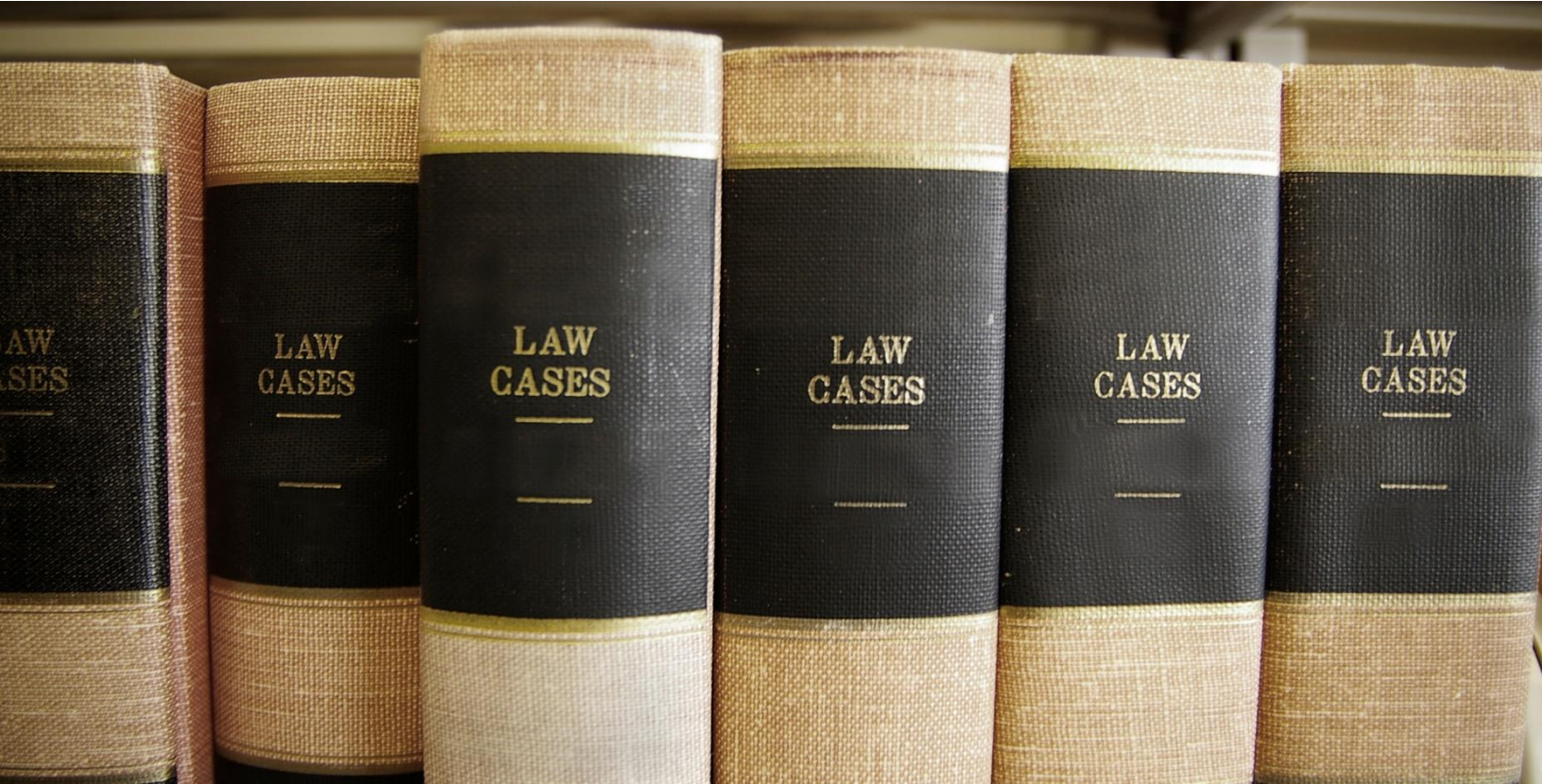
물론 송객수수료 과당경쟁 문제로 인한 대량 판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면세사업자의 경영진이 손해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제품판매기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현재와 같이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해지고, 중국의 저가공세와 해외직구에 별다른 대책 없이 급증하도록 놓아 뒀서 국내 소비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하나라도 더 외국에 판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제조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보세경로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면세점 해외대량구매를 창고에 반입한지 2 개월이 넘는 것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무역이론을 가져와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장품제조기업의 건의를 외면하지 말고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빠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장품협회나 주요 화장품제조기업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해외로 우리의 제품을 신속하게 판매해서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이 매출과 고용을 통해 국가의 부를 이루는 것은 적극 지원해야 하고, 그 채널이 면세점이라고 해서 달리 강하게 제한을 할 이유는 없다. 국산 화장품 제조기업이 예전처럼 중국시장에서 날개를 단 것처럼 잘 팔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변경분류하면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143)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8.4.10.부터 2023.4.9.까지 독일 소재 A 등(이하 "쟁점수출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M호 등 64건으로 유리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플라스틱 실험용 주사기(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3.91-9000호(이하 "제8413호"라 한다)로,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9031.90-9000호(이하 "제9031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8.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①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017.90-0000호(기본관세율 8%,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7017호"라 한다)로, 쟁점②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3926.90-9000호(WTO 양허관세율 6.5%, 한-EU FTA 협정관세율 0%)(이하 "제3926호"라 한다)로 각각 변경한 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에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2023.8.23. 및 2023.9.5.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00원, 부가가치세 합계 00원 및 가산세 합계 00원 총합계 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단

(1) 청구인 주장 요약

처분청은 쟁점처분 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산지신고서는 상업송장(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신고서에 HS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청 '품목분류번호 해석상'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하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은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번호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상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지침 제2호 가목에서 HS 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HS 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하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류의 오류 및 품목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거나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품목번호만을 수정하여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처분청 의견 요약

쟁점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위 지침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FTA 관세특례법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처리지침이나 품목번호 상이 처리지침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관세법령에 의한 경정까지 위 지침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적용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은 후, 품목번호 변경에 따라 「관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실행세율을 선택하여 쟁점처분을 하였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오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의가 없습니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면 되었으나, 쟁점물품의 변경된 각 품목번호에 따른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단일기준으로서 쟁점①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7017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의 변경된 품목번호(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인바,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변경으로 인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선택기준'에서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원산지 충족 요건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변경된 품목번호에도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나, 이는 관세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설령, 관세조사 시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국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청구법인에게도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며, 징수권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3. 판단

쟁점처분은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적용하였던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세법」에 우선하여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가 아닌 이상 FTA 관세특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에 품목번호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적용하였던 품목번호인 제8413호 및 제903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인데 처분청이 변경한 품목번호(제7017호 및 제3926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쟁점①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이고, 쟁점②물품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품목번호 변경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원산지신고서상 기재와 다르다거나 한-EU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쟁점처분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수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6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 및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각각 승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관세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에 있어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용 제한사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IDOL GOODS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1. 개요

K-POP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해외매출 1조원이 돌파하고 있으며, 아이돌 굿즈 시장과 무역량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굿즈는 다종의 물품이 세트로 구성된 형식이 많은 바, 품목분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신혜영
관세사

hyshi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쟁점 물품 및 결정 세번

연예인 사진이 인쇄된 사진첩 및 종이카드, 작성된 버니즈 클럽 지원서, 브로셔, 비금속제 뱃지(badge)를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 입니다.

1) 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본 물품은 인쇄된 사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제 4911.91-9000 호(기본관세율 8%, WTO 협정관세율)에 분류합니다.

2) 비금속제 뱃지

아연합금으로 만든 뱃지이므로 비금속으로 만든 모조 신변장식용품인 브로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제 7117.19-4000 호(기본관세율 8%, WTO 협정관세율)에 분류합니다.

3. 결정 사유(품목분류 4 과 - 1585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3 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물품은 사진이 인쇄된 책자, 낱장으로 인쇄된 사진, 가입서, 비금속제 뱃지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커의 경우 위 통칙의 해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아

① 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② 비금속제 배지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합니다.

4. 결정에 대한 의견

본 사례와 같이 하나의 상품임에도 그 내용물이 명백히 세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각각의 아이템으로 분류해 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상 아이템에 대한 세부 정보 기재가 필요한 것 등 수출입 업무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편의를 위해서 관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 중 물품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 화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뉴진스 Goods 갈무리>





Global Customs Insight

EUDR 시행 12개월 연기와 우리의 자세

1. EUDR 개요

EUDR(유럽연합 삼림벌채 규정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전세계적 기후위기로 작용하는 산림전용(산림이 농업, 가축사육 등을 위한 농지로 전환되는 것) 및 산림 황폐화 (원시림이 인공림으로 전환되어 산림피복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 관련된 특정 상품 및 제품을 EU시장에 공급 및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채취단계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UDR 대상품목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7가지이며, ① 7가지 물품(Relevant Commodity)이거나 해당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 및 포함하여 생산된 제품(Relevant Product)이면서, ②부속서 1의 HS CODE목록 대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차미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의무 및 제재사항

EU 에 규제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 유통하기 위한 사업자(Operator: 상업 활동 과정 중에서 해당 제품을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와 유통업자(Trader: 상업 활동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이외의 공급망 내 모든사람)는 취급물품이 ①산림파괴관련 위험성이 없고, ② 원산지 국가의 관련법률에 따라 생산이 되어야 하며, ③ 실사진술서 (제품 및 원자재의 지리정보 포함)를 통해 EUDR 규정의 요구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EUDR 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연간 총매출액의 4%이상) 제품과 수익 몰수, 공공조달 입찰 및 보조금 수혜자격제한, 수출의 금지, 통관의 간소화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25년 12월 30일/ 26년 6월 30일)

의무주체인 사업자와 유통자가 대기업(①대차대조표 총액 2000 만유로 초과, ②순매출액 4000 만유로 초과, ③평균직원수가 250 명을 초과 2 가지 이상 충족)에 분류된다면, EU 에 취급물품을 수입, 수출, 유통하기 위해, 시행일 2024년 12월 30일까지 실사선언서를 위한 실사 및 위험평가 조치를 완료하여야 했습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많은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공식요청 및 EU 회원국들의 시행연기에 대한 요청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12개월 연기결정(24.10.16) 하였으며, 유럽의회 승인 시, **대기업은 25년 12월 30일, 중소·중견기업은 26년 6월 30일부터 EUDR 이 적용**이 확정됩니다. 사업자와 유통업자는 상품 및 원자재의 각 공급망에 대한 실사체계 구축 및 실사선언서제출, 매년 실사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검토 및 보고서작성, 정보시스템을 활용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4. 철저한 사전준비필요

시행연기로 12개월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추가확보 되었지만, 아직까지 EUDR 에 대해 생소하여,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어려워하는 사업자와 유통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EUDR 대상품목 판정부터 위험관리까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EU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시기 바랍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EU 탄소국경제도 (CBAM : EU 수입품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1. CBAM 개요

1.1 CBAM 도입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도입한 탄소 국경조정제도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EU역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탄소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 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탄소 누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1.2 CBAM 개념

CBAM은 EU에 수출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EU의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해당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되며, EU 내 수입품이 EU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합니다. EU 역내에서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품에도 적용함으로써 EU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CBAM 인증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

1.3 CBAM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 전환기간을 거쳐, 이후 2026년부터 본격적인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며 제도의 운영 방안을 확립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 전환기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실제 비용 부과는 없는 기간.

구분	전환기간	확정기간	
기간	2023.10.01~2025.12.31	2026.01.01~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규정(EU) 2023/956 부속서 I 제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기 (품목확대가능성 有)	
의무 사항	모니터링 EU CBAM 방법론, 특정방법론 사용유예(non EU 방법 (~'24.12), 기본값사용(~'24.7)) 또는 추정값 사용가능	EU CBAM 방법론	
	보고 분기별CBAM 보고서제출(분기 종료후 1개 월 이내 / 보고내용 : 고유내재배출량, 분 기수입량, 기지불탄소가격)	연1회CBAM 신고서제출(다음년도5월31일까 지 / 제출자료 : 보고정보,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	
	검증	X	연1회 현장검증 및 검증보고서 제출
	인증서	X	CBAM 인증서제출(다음년도5월31일까지)
	과징금	CBAM 보고서 미제출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에 대해 10~50 EUR/CO2 환산톤(유럽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승)	CBAM 인증서 미제출에 대해 2013년100 유로/CO2환산톤(유럽소비자물 가지수에따라상승)

2. 전환기간 CBAM 대응

2.1 EU CBAM 대상 여부 인지

기업은 자사 수출물품이 CBAM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BAM 대상인지 여부는 제품별 CN코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U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수출하는 물품이 CBAM 이행규정 부속서II(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956 AnnexII) 상 기재된 CN코드의 물품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수출 시 작성한 HS코드가 EU 수입 시의 CN코드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 상품의 CN코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EU 수출기업과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국내 기업의 대응

Case 1) EU 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EU 역내 수입자)

EU 내에 수입업자 역할을 담당하거나 EU 내에서 세관 대리인을 통해 직접 EU 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은 CBAM보고서(CBAM Report)를 전환 등록부(CBAM 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해야 합니다.

Case 2) EU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기업

EU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출기업은 수입기업으로부터 요청받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ase 3) EU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에게 판매하는 기업

① 사업장 정보, ② 고유 내재배출량 정보, ③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를 구매 기업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제공 시 향후 고객사가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공급망 기업 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CBAM 대응을 위해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급망 내 모든 기업이 정확한 탄소 배출 데이터를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과 검증 절차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마치며

CBAM 제도는 EU의 환경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강화되는 탄소 규제에 발맞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공급망 관리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BAM은 국제 무역에서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요구하는 변화의 신호이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건 구비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품목분류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고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하 나

관세사 자격

hnlee@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1. 개정사유

-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 7 조 개정)

-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제 8 조 개정)

-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을 삭제(요청 품목수 10 개 이하) 하였습니다.

3)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 8 조 개정)

-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하고,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하였습니다.

4)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5)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지사항 반영 등
(수출) 5 개 법령 17 개 품목 추가, 58 개 품목 변경, 5 개 품목 제외
(수입) 16 개 법령 56 개 품목 추가, 287 개 품목 변경, 19 개 품목 제외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